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1
----------	-------

발의연월일 : 2019. 2. 18.

발의자 : 김도읍 · 추경호 · 이채익

김태흠 · 김기선 · 엄용수

김정재 · 주광덕 · 박명재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 ·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u>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u> <u>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u> <u>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p>
<p><u>&lt;신 설&gt;</u></p>	<p>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u>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u> <u>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u> <u>또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특정</u> <u>정당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u> <u>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u> <u>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p> <p>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